음주운전자에 대해 대체형벌의 집행을 정지하고 자유 박탈형을 적용하는 조항의 위헌성[1)]

1. 사건개요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 1심에서 피해자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20.770[2)] (이하 '개정 교통법') 제195조와 음주 측정을 부당하게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제195조의2를 적용하여, 730일의 금고의 일반 수준(presidio menor en su grado medio)[3)]에 처해졌다. 이와 더불어, 1심 법원은 이 사건에 제196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법 18.216[4)]에 따른 대체형벌(penas alternativas)의 집행을 정지하고 상기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1년씩 총 2년의 기간 동안 자유 박탈형을 이행하도록 판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발파라이소(Valparaíso)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개정 교통법 제195조, 제195조의2, 제196조의3이 헌법 제19조 제2항[5)]에 따른 법 앞의 평등, 헌법 제19조 제3항[6)]에 따른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또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6. 2. 3.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였다.

---

1) 칠레 헌법재판소 제1부 2016년 12월 13일, 판례번호 2983-16.
2) 심각한, 중대한 손해를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음주상태에서의 운전 범죄에 관한 개정 교통법
MODIFICA LA LEY DEL TRÁNSITO, EN LO QUE SE REFIERE AL DELITO DE MANEJO EN ESTADO DE EBRIEDAD, CAUSANDO LESIONES GRAVES, GRAVÍSIMAS O, CON RESULTADO DE MUERTE.
3) 541일에서 3년 1일 미만에 해당되는 형벌이다.
4) 자유 박탈형이나 자유를 제한하는 형을 대체하는 형벌에 관한 법률
ESTABLECE PENAS QUE INDICA COMO SUSTITUTIVAS A LAS PENAS PRIVATIVAS O RESTRICTIVAS DE LIBERTAD.
상기 법률에서 대체형벌의 방법으로 형의 조건부 면제, 보호관찰, 야간 감금이 제시되고 있다.
5) 헌법 제19조: 헌법은 모든 사람에 대해 다음을 보장한다.
② 법 앞의 평등. 칠레에서 특권을 갖는 자나 단체는 없다. 칠레에서 노예는 없으며 본 영토를 밟는 자는 자유를 누린다. 남성과 여성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이나 공권력은 자의적인 차별을 규정할 수 없다.
6) 헌법 제19조: 헌법은 모든 사람에 대해 다음을 보장한다.
③ 권리 행사시 법에 의한 동등한 보호. 모든 사람은 법에 따라 법적으로 방어할 권리를 가지고, 어떤 당국이나 개인도 당사자가 요청한 변호사의 개입을 차단하고,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어떠한 법도 처벌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서는 형벌을 규정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95조. 제168조[7]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에 대해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 3에서 7 UTM[8]이 부과되고, 면허증이 1개월간 정지된다.

제176조[9]에 따른 운전을 중단할 의무, (사람을) 조력할 의무, 손해가 발생한 어떤 사고에 대해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금고의 일반 수준에 처하도록 하고, 기계적으로 구동되는 차량을 향후 운전할 수 없으며, 벌금 7에서 10 UTM이 부과된다.

이전 문단의 경우에 발생된 손해가 형법 제397조[10] 제1항에 명시된 것이거나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다면, 그 책임자는 금고의 최고 수준(presidio menor en su grado máximo)[11]에 처하도록 하고, 기계적으로 구동되는 차량을 향후 운전할 수 없으며, 벌금 11에서 20 UTM이 부과된다. 그리고 제3자 소유주의 권리를 해함이 없이, 범죄를 저지른 차량을 압수하고, 이를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칙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형벌을 정하기 위해 동법 제196조의2와 제196조의3이 적용된다.

제195조의2. 제182조[12]에 따른 음주 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 약물을 검사하기 위한 호흡 측정이나 다른 과학적 검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운전자에 대해 벌금 3에서 10 UTM이 부과되고, 면허증이 1개월간 정지된다.

형법 제397조 제1항에 해당되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명백한 호흡 측정이나, 혈액 내의 알코올 섭취를 파악하기 위한 동법 제183조에 따른 과학적 검사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약물의 존재 여부나, 이러한 결과를 변경하는 어떤 조작의 실행이나, 동일한 목적을 가지

7) 교통, 주차, 폐기물 수집, 차량의 적재 및 하역 시간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다.
8) UTM(Unidad Tributaria Mensual): 칠레 세금 계산시 사용하는 가상 화폐단위로 1 UTM = 40,447.0 페소 = US$ 80.63(2013. 9월 기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2779&cid=48546&categoryId=48546 코트라(KOTRA) 국가정보, 칠레의 관세제도 참조.
9) 보행자의 통행에 관한 의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0) 타인을 상해, 폭력 또는 학대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11) 3년 1일에서 5년에 해당되는 형벌이다.
12) 이 조항은 법 19.495에 의해 삭제되었다.

고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부하는 운전자에 대해 금고의 최고 수준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 11에서 20 UTM이 부과되며, 기계적으로 구동되는 차량을 향후 운전할 수 없다. 그리고 제3자 소유주의 권리를 해함이 없이, 범죄를 저지른 차량을 압수하고, 이를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칙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형벌을 정하기 위해 동법 제196조의2와 제196조의3이 적용된다.

이전 문단에서 명시된 형벌은, 형법 제74조에 따라, 각각의 범죄 또는 과실죄에 해당되는 책임을 운전자에게 함께 부과한다.

제196조의3. 제196조에 규정된 죄[13]에 관하여, 일반 규범에 따라 법 18.216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대체형벌의 집행은 1년간 정지되며, 이 기간 동안 유죄를 선고받은 자는 유죄에 대한 자유 박탈형을 실질적인 방식(forma efectiva)으로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동법 제38조[14]를 적용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든 자유 박탈형의 대체가 부과된 벌금, 압수와 자격 박탈의 이행을 정지 내지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2. 결정요지

(1) 법정의견

1) 법 앞의 평등(igualdad ante la ley)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려면, 자의성이 없는 논리적인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고 절차에 참여하는 자들의 기본권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른 요소들 중에서 공평한 판사가 필요함과 더불어, (원고나 피고의) 무방어(indefensión)를 방지하는 규범이 있고, 증거를 제시하고 반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또한 실질적이고 이유가 제시되고 공개될 수 있는 판결

13) 형법 제397조 제1항의 경우나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 등이다.
14) 제38조: 자동차 소유자는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등록 명부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으로 추정된다.

이 존재하여야 하며, 이것이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되 판결의 불가침성(intangibilidad)으로 법치국가에 따른 법적 확실성과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내용이, 헌법 제19조 제3항의 권리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 이 부분에서의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다.

2) 1심 법원의 판사가 심판대상조항 제195조와 제195조의2를 적용하면서 이유를 설시하였고 해당 심급에서 담당 판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적법절차의 보장을 준수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적법절차(debido proceso)의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의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 여기에서의 논의는 판사가 법을 해석한 방식, 다시 말해 심판대상조항 제195조와 제195조의2가 객관적으로 적용되었는지에 관한 것이고, 이는 합헌성의 판단 대상이 아니며 형사 범죄에 해당되는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에 해당되어 담당 판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다.

3) 입법자는 범죄행위를 유형화함과 동시에, 심판대상조항 제195조와 제195조의2에서 형벌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 도움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자 - 범법자를 정할 수 있다. 이러한 형벌의 종류를 형성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형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형사적·정치적인 정당성을 나타내는 수단이므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적법성의 원칙과 및 형벌의 정당성(이것의 집행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으로 변질되는 것은 금지되지만)과 재사회화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없다.

4) 한편, 대체형벌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형벌의 성격을 지니며, 유죄를 선고받은 자를 통제하고 이들의 사회적 재통합

에 기여하고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한다. 또한, 국제인권법에 의하더라도 자유를 박탈하는 대체형벌은 어떠한 "혜택"(beneficio)에 해당되지 않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처벌받지 않는 것(impunidad)과 동일시될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 국가의 처벌권(ius puniendi)과 자유 박탈형은, 중요한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중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다른 수단의 사용이 불충분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 때문에 입법자가 과도한 방법으로(manera desmedida) 자유 박탈형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제196조의3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대체형벌의 적용을 1년간 정지하는 것은, 더 중한 범죄로 유죄로 선고받은 자들과 관련해서도 균형을 상실했고 불공평하다(desproporcionada e inequitativa). 또한, 상기 조항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대체형벌의 적용을 1년간 정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데, 형벌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와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사회적 재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지 않은바, 이러한 목적이라면 운전면허증을 제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2) 주문

첫째, 개정 교통법 제195조, 제195조의2 및 아래에서 위헌으로 선언한 부분을 제외한 제196조의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둘째, 제196조의3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위헌 선언한다.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다만, 각각의 대체형벌의 집행은 1년간 정지되며, 이 기간 동안 유죄를 선고받은 자는 유죄에 대한 자유 박탈형을 실질적인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

(3) 반대의견

Cristián Letelier Aguilar 재판관 - 제195조의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 대

한 위헌의견

무죄추정의 원칙은 모든 사람이 갖는 자기부죄(自己負罪) 거부의 권리(derecho de no autoincriminarse)와 관련 있는데, 여기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유죄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의 묵비권뿐만 아니라 자기부죄로 이어지는 어떤 행위나 행동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바로 후자의 경우 상기 조항들에 의해 처벌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9조 제3항에서 내포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